

지방정부 부서에 의해 매년 채택되어야만 하며 시당국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져야함

표본



평등 주택 기회

공정 주택 결의안

(시당국의 이름)의 모든사람에게 다음을 알려야함. 매매, 단기임대, 장기임대, 주택 또는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금융 또는 중개인의 공급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국가적 기원, 종교, 가족 상황(아이동반 가족), 또는 결점(장애인)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은 제 VIII 시민권리조례 1968(연방 공정주택조례)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및 Pennsylvania 인간관계 조례가 혈통 및 나이의 계층에 추가적인 보호를 더할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인종, 피부색, 성별, 국가적 기원, 종교, 가족 상황, 결점(장애), 나이 및 혈통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주택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시당국의 이름)의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시당국의 이름)은 이로써 다음의 결의안들을 통과시킵니다.

결의됨, (시당국의 이름)의 가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국가적 기원, 종교, 가족 상황, 결점(장애), 나이 및 혈통에 의해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것이며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다음의 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평등을 추구할 것입니다. 지방 공정 주택 공무원, Pennsylvania 인간관계 위원회 및 U.S. 주택 및 도시 개발 부서 어디든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서

추가적으로 결의됨 (시당국의 이름)은 이 결의안을 대중적으로 알려지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부동산 소유주, 개발자, 및 건축업자가 다음의 법에 따라 각각의 책임 및 권리를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방 공정 주택 조례, Pennsylvania 인간 관계 조례, 및 있다면 지역 법 또는 법령

추가 조치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나 다음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1) 지역 공정 주택 공무원의 설명 및 연락 정보를 공지, 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지역 언론을 통한 공정 주택 정보에서 및 지역사회 계약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경우 항의하는 과정을 포함함.
- (2) 공정 주택 법 및 Pennsylvania 인간 관계 조례에 따라 대중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매년 최소 한 건의 공정 주택활동을 시행함.
- (3) 주택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모든 것들에서 공정 주택 로고 사용. 다음과 같은 것들이나 다음의 것들로 한정되지 않음.
 - a. 프로그램을 논의 또는 공석을 위한 공공 광고
 - b. 보조의 적용
 - c. 계약
 - d. 연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시당국 서신

귀하가 장애가 있거나 어떠한 통지에 접근하는데 합당한 편의가 필요하다면, (시당국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TTY, 이메일 및 웹사이트)의 사무실로 연락해주시시오.

귀하가 제한적 영어 구사자이거나 어떠한 통지의 번역이 필요하다면, (시당국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TTY, 이메일 및 웹사이트)의 사무실로 연락해주시시오.

(날짜)에 열린 (시당국의 이름)의 정기회의에서 승인됨

서명:

최고 선출직 공무원

날짜

도장